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92

발의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 강민국 · 권은희 · 김태호

김희곤 • 류성걸 • 박덕흠

서일준 • 안병길 • 윤주경

이헌승·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결제업자(이하 '선불업자')들에게 선불충전 된 '충전금'을 결제업자들이 전용(轉用)하 고 있는 실태가 알려짐.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의 머지포인트 상 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이용 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 래법'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불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두터운 소비 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선불전자금융업자"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자금융업자"를 "선불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③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지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불전자금융업자등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선불

전자금융업자등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선불전자금융 업자등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 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지급보증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선불전자금융업자"란 제
	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
	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5. ~ 22. (생 략)	5. ~ 22. (현행과 같음)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①
금융회사 또는 <u>전자금융업자</u> 는	<u>선불전자금융</u>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	업자(이하 "선불전자금융업자
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u>등"이라 한다)</u>
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 관
	리)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사전

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 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 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선불충전금을 예 치 또는 신탁한 선불전자금융 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 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 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의 청구 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선 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선 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우 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 <u>우</u>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선불 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지 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불전자금융업자등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예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에

<신 설>

선불충전금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선불전자 금융업자등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19조의2제 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제19 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이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선불 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지급에 관하여 필

제49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u><신</u> 설>

⑤ ~ ⑧ (생 략)

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제4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⑤ ~ ⑧ (현행과 같음)